##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단체협약 개정(안) 신구대비표

	<u> </u>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전 문 (생략) 광고진흥사업 및 <u>방송광고영업</u> 의 주체로서 방송과	전 문 (생략) 광고진흥사업 및 <u>광고영업</u> 의 주체로서 방송과 광	○ 방송광고로
광고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협약을 체결하며, 상호 성	고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협약을 체결하며, 상호 성실	한정되어 있는 문구 정비
실히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히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제1조 (교섭단체 인정) 공사는 조합이 조합원을 대표하여 공사	제1조 (교섭단체 인정) 공사는 조합이 조합원을 대표하여 공사	○ 문구 정비
와 교섭하는 단체임을 인정한다. 단, 교섭창구 단일화가 필요한	와 교섭하는 단체임을 인정한다. 단, 교섭창구 단일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u>노조법</u> 에 따라 당해 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인	경우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	
정된 경우 조합원을 대표하여 공사와 교섭하는 단체임을 인정한	라 한다)에 따라 당해 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인정된 경	
다.	우 조합원을 대표하여 공사와 교섭하는 단체임을 인정한다.	
	기 조합전을 대표하여 중시의 교업이는 단세급을 단정한다.	
제5조 (조합원의 자격) <u>다음 각 호의 자를 제외한</u> 모든 직원은	제5조 (조합원의 자격) <u>공사의</u> 모든 직원은 조합원이 될 수 있	○ 문구 정비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다만,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	다. 다만,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제외	
동하는 자는 제외하며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하며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014.12.31>	1. 〈삭제 2014.12.31〉	
2. 팀장 이상 보직자	2. 팀장 이상 보직자	
3. 인사, 노무, 감사, 경비업무 담당자	3. 인사, 노무, 감사, 경비업무 담당자	
4. 임원의 운전원, 비서	4. 임원의 운전원, 비서	
제6조 (부당노동행위의 금지) 공사는 <u>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u>	제6조 (부당노동행위의 금지) 공사는 <u>노동조합법</u> 제81조의 각호	○ 문구 정비
법 제81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7조 (균등 처우) 공사는 성별, 국적, 신앙 또는 <u>사회신분</u> 등을	제7조 (균등 처우) 공사는 성별, 국적, 신앙 또는 <u>사회적 신분</u>	○ 문구 정비
이유로 노동 조건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할 수 없다.	등을 이유로 노동 조건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할 수 없다.	
제8조 (협약의 적용) 본 협약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전국언	제8조 (협약의 적용) 본 협약은 <u>공사, 조합 및 조합원</u> 에 대해 적	○ 문구 정비
론노동조합 한국방송광고진홍공사지부 조합원에 대해 적용한다.	용한다.	
제9조 (협약의 우선) 이 협약에 정한 기준은 공사의 사규에 우	제9조 (협약의 우선) 이 협약에 정한 기준은 공사의 사규에 우	○ 문구 정비
선하며 협약기준에 미달하거나 상반된 개별 근로계약은 이를 무	선하며 협약기준에 미달하거나 상반된 근로계약은 무효로 하고	
a, , , , , , c, , , , , , , , , , , , ,		

효로 하고 그 부분은 협약기준에 따른다.	그 부분은 협약기준에 따른다.	
제13조 (근로시간면제자의 대우) 공사는 조합의 근로시간면제자	제13조 (근로시간면제자의 대우) 공사는 조합의 근로시간면제자	○ 근로시간면제 이
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우한다.	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우한다.	후 보직 제한 확대
1.~4. (생략)	1.~4. (생략)	
5. <u>지부장에 한하여</u> 근로시간면제 해제 이후 2년 이내 비서실	5. 근로시간면제자는 근로시간면제 해제 이후 2년 이내 비서	
및 노무관련 보직을 부여할 수 없다. <개정 2023.2.10>	실 및 노무관련 보직을 부여할 수 없다. <개정 2023.2.10>	
제20조 (통보의무) <u>공사와 조합은 다음 제 1, 2항 각호의 경우</u>	제20조 (통보의무) ① 조합은 다음 각호의 경우 지체없이 공사	○ 문구 정비
지체없이 상대방에 문서로 통보한다.	에 문서로 통보한다.	
① 조합의 통보사항	1. 조합명칭 변경시	
1. 조합명칭 변경시	2. 규약 변경시	
2. 규약 변경시	3. 조합의 임원 중 변동이 있을시	
3. 조합의 임원 중 변동이 있을시	4. 조합이 타단체에 가입 또는 탈퇴시	
4. 조합이 타단체에 가입 또는 탈퇴시	5. 조합원이 상급단체의 임직원으로 되었을시	
5. 조합원이 상급단체의 임직원으로 되었을시	6. 조합원이 가입, 탈퇴 또는 제명되었을시	
6. 조합원이 가입, 탈퇴 또는 제명되었을시	7. 조합 근로시간면제자의 변동시	
7. 조합 근로시간면제자의 변동시		
② 공사의 통보사항	② 공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 지체없이 조합에 문서로 통보한	
1. 기관명칭의 변경시	<u>다.</u>	
2. 정관 및 조직기구의 변경시	1. 기관명칭의 변경시	
3. 근로조건에 관한 규정과 기타 제규정 등 사규의 변경시	2. 정관 및 조직기구의 변경시	
4. 직원의 신규채용, 전보, 특별승진, 포상시	3. 근로조건에 관한 규정과 기타 제규정 등 사규의 변경시	
5. 임원의 임면시	4. 직원의 신규채용, 전보, 특별승진, 포상시	
6. <u>기타 공사와 조합의 협의사항</u>	5. 임원의 임면시	
	6. 기타 조합과 협의하여야 할 사항	
제21조 ( <u>방송광고영업</u> ) ① 공사는 <u>방송광고</u> 영업활동이 방송 및	제21조 ( <u>광고영업</u> ) ① 공사는 <u>광고영업</u> 활동이 방송 및 광고산업	○ 방송광고로
광고산업의 발전과 국리민복을 위한 중요사업임을 인식하여 <u>방</u>	의 발전과 국리민복을 위한 중요사업임을 인식하여 <u>광고영업</u> 의	한정되어 있는 문구 정비
<u>송광고</u> 영업의 공정성을 확립해야 한다.	공정성을 확립해야 한다.	
② ~ ③ 생략	② ~ ③ 생략	

제24조의 2 (경영설명회 개최) 공사는 연 2회 이상 경영설명회	제24조의 2 (경영설명회 개최) 조합은 공사에 연 2회 이상 경영	○ 경영설명회 관련
를 개최할 수 있다.	설명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사항 정비
〈신설 2016.12.30.〉	〈신설 2016.12.30.〉	
제25조 (인사원칙) ① 생략	제25조 (인사원칙) ① 생략	○ '25년 사규개정
② 공사는 조합원 승진 및 전보에 관한 인사는 정례적으로	② 조합은 인사권이 공사에 귀속함을 확인한다. 공사는 조합	예정시항 반영(경력개
실시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실시하지 못할 경우 조합과	원 승진 및 전보에 관한 인사를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하며, 조	발제도 폐지, 전문직무
협의한다.	합원의 직급별 정현원차에 따른 직급 승진에 관해서는 매년 $1$	제 강화)
	월 실시하도록 노력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실시하지 못할	
	경우 조합과 협의한다.	○ 전문직무제 강화
③ 생략	③ 생략	관련 노동조합 문구
④ 공사는 조합원의 직무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u>경력개발제</u>	④ 공사는 조합원의 직무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직무제	제안
도(CDP)를 도입·시행할 수 있다.	를 도입·시행하고,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경력개발 체계를 마	
	련하는 등 직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⑤~ ⑨ 생략	⑤~ ⑨ 생략	
제28조 (정년) 2016년 1월 1일부터 직원의 정년을 60세로 한다.	제28조 (정년) <u>직원의 정년은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u>	○ 향후 정년연장
정년 관련 사항은 인사규정 제60조에 따른다. <개정 2015.12.29>	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정년 규정과 공사 인사규정 제60조	도입 고려로 문구 삭제
	<u>에 따른다.</u>	
제30조 (징계) ①~③ 생략	제30조 (징계) ①~③ 생략	○ 문구 정비
④ ①항 내지 ②항에 따른 인사위원회 참석자와 조합은 공사가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사위원회 참석자와 조합은 공사가	
보안 을 요청한 사항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보안 을 요청한 사항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제31조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①공사는 부당노동행위로 불이익	제31조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①공사는 부당노동행위로 불이익	○ 문구 정비
처분을 받은 조합 또는 조합원이 노동위원회나 법원의 구제명령	처분을 받은 조합 또는 조합원이 노동위원회나 법원의 구제명령	
을 받았을 경우 <u>다음의</u> 조치를 취한다.	을 받았을 경우 <u>다음 각호의</u> 조치를 취한다.	
1. (생략)	1. (생략)	
2. 원직으로 <u>복귀시키되</u> 처분으로 인한 보수지급상의 불이익	2. 원직으로 <u>복귀시킴과 함께</u> 처분으로 인한 보수지급상의 <u>불</u>	
을 보전한다.	이익 보전	
② (생략) <신설 2023.2.10>	② (생략) <신설 2023.2.10>	
제33조 (출산양육지원) 공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	제33조 (출산양육지원) 공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	

원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에 따라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	원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에 따라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생리휴가, 태아검진 휴가 등을 통해 출산양육을 지	시간 단축, 생리휴가, 태아검진 휴가 등을 통해 출산양육을 지	
원한다.	원한다.	
①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 ~ 5. (생략)	1. ~ 5. (생략)	
6. 육아휴직은 <u>2회</u> 에 한해 분할 사용할 수 있다.	6. 육아휴직은 <u>3회</u> 에 한해 분할 사용할 수 있다.	
② (생략)	② (생략)	
③ 육아시간	③ 육아시간	
생후 18개월 미만의 유아를 가진 직원은 1일 1시간 육아시간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직원은	
을 편리한 시간에 사용할 수 있다.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36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	
	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④ (생략)	④ (생략)	
제34조 (휴직자의 대우) ①(생략)	제34조 (휴직자의 대우) ①(생략)	○ 무의미한 규정으
② 삭제 <2014.12.31>	② 삭제 <2014.12.31>	로 삭제
③ 휴직기간의 보수 및 퇴직금 지급시 근속년수 산입 여부는	③ <u>(삭제)</u>	
<u>공사 보수규정에 의한다.</u> <개정 2014.12.31>		
제35조 (복직) ① 공사는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	제35조 (복직) ① 공사는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	○복직자 원에 의한
되어 복직코자 할 때는 <u>즉시 원직에 복직시킨다.</u>	되어 복직코자 할 때는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도록 노력한다.	복직 유연성 확보
② 원직의 소멸시 혹은 6개월이상 휴직으로 원직복귀가 어려울	② 원직의 소멸시 혹은 6개월이상 휴직으로 원직복귀가 어려울	
때는 본인의 의사를 <u>존중하여 동등 직급으로 복직시킨다.</u>	때는 본인의 의사를 <u>존중하여 복직시킨다.</u>	
제41조 (시간외근무 및 휴일근무) ① <u>공사는 업무형편상 필요한</u>	제41조 (시간외근무 및 휴일근무) <u>(삭제)</u>	○ 근로기준법과 동
때 시간외근무 및 휴일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		일하므로 삭제
② 제1항에 의거, 시간외근무 및 휴일근무를 한 자에 대하여		
는 사규가 정하는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단, 수당을 지급받		
지 못한 경우 보상휴가를 사용한다. <개정 2018.12.27.>		
제43조 (휴가사용) ①~⑥ (생략)	제43조 ( <u>연차휴가</u> ) ①~⑥ (생략)	
⑦ 연차휴가는 직원의 신청에 의해 <u>30분 단위</u> 로 나누어 사용	⑦ 연차휴가는 직원의 신청에 의해 $10분 단위$ 로 나누어 사용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⑧ (생략)	⑧ (생략)	
⟨신설⟩	제43조의2 (휴가의 나눔) ① 공사는 조합원이 질병 치료를 위한	○ 휴가나눔제 신설
	휴가가 필요한 경우 휴가 나눔제를 실시한다.	
	② 휴가 나눔제에 있어 기부할 수 있는 휴가는 저축휴가 및	
	보상휴가로 한다.	
	③ 공사는 휴가 나눔제 시행에 있어 기부자 및 기부내용에 관	
	해서는 공표하지 않는다.	
	④ 휴가 나눔제의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44조 (출산전후휴가) <u>공사는 임신 중의 여성직원에 대하여는</u>	제44조 (출산전후휴가) (삭제)	○ 근로기준법과 동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일하므로 삭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46조 (공가) 공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필	제46조 (공가) 공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필	○ 배심원 출석의
요한 기간의 공가를 준다.	요한 기간의 공가를 준다.	공가 인정
1. (생략)	1. (생략)	
2. 법원, 기타 공공기관에 증인, 참고인, 피고인, 당사자 등으	2. 법원, 노동위원회 기타 공공기관에 증인, 참고인, 피고인,	
로 출석하는 때	<u>당사자, 배심원 등</u> 으로 출석하는 때	
3. ~ 11. (생략)	3. ~ 11. (생략)	
제51조 (교육훈련) ① (생략)	제51조 (교육훈련) ① (생략)	○ 문구 정비
② 공사는 매년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과 운영 <u>등에</u> 조합과 협	② 공사는 매년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과 운영 <u>등에 관하여</u> 조	
의한다.	합과 협의한다.	
③ ~ ④ (생략)	③ ~ ④ (생략)	
제61조 (임금원칙 및 근로조건 저하 방지) ① (생략)	제61조 (임금원칙 및 근로조건 저하 방지) ① (생략)	○ 문구 정비
② 공사는 신공사 출범시 관련법에 규정된 직원의 고용승계	② 공사는 <u>직원의 현재의 제반 근로조건의 저하를 방지하도록</u>	
규정에 따라 현재의 제반 근로조건의 저하를 방지하도록 노력한	<u>노력한다.</u>	
다.		
제64조 (통상임금) "통상임금"이라 함은 직원에게 정기적 ㆍ	제64조 (통상임금) "통상임금"이라 함은 직원에게 정기적 ㆍ 일률	○ 문구 정비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 진 금액으로 공사 임 · 직원의 경우에는 <u>연봉월액, 특수직수당</u> 및 내부평가급 최소지급분의 1개월분을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금액으로 공사 임 · 직원의 경우에는 연봉월액(직무급 가산액 포함), 내부평가급 및 직무실적평가급 최소지급분의 1개월분을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 부 칙

제8조 (휴가 나눔제) 휴가 나눔제는 2025년 내에 도입·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